

국회에서 의결된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.

대 통 령 문 재 인 

2019년 4월 23일

국 무 총 리 이 낙 연

국 무 위 원

법무부장관

박 상 기

●법률 제16343호

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

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별표 제1호가목 중 “제114조제1항”을 “제114조”로 하고, 같은 호 자목부터 거목까지를 각각 카목부터 더목까지로 하며, 같은 호에 자목 및 차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, 같은 호 하목(종전의 타목) 중 “제350조 및 제352조(제350조의 미수범만 해당한다)”를 “제350조, 제350조의2 및 제352조(제350조 및 제350조의2의 미수범만 해당한다)”로 하며, 같은 호 거목(종전의 파목) 중 “제347조, 제347조의2, 제351조(제347조 및 제347조의2의 상습범만 해당한다)”를 “제347조, 제347조의2, 제348조, 제351조(제347조, 제347조의2 및 제348조의 상습범만 해당한다)”로 한다.

자. 제2편제29장 체포와 감금의 죄 중 제276조부터 제281조까지(체포는 제외한다)의 죄

차. 제2편제31장 약취, 유인 및 인신매매의 죄 중 제287조부터 제292조까지, 제294조 및 제296조의 죄

별표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3. 「관세법」 제269조·제270조의2 및 제271조제2항(제269조의 미수범만 해당한다)의 죄

별표 제4호 중 “제53조제2항제9호”를 “제53조제2항제2호·제3호 및 제9호”로 한다.

별표 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7. 「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」 제30조제1항 및 제2항의 죄

별표 제9호 중 “제93조”를 “제230조”로 한다.

별표 제11호 중 “제71조제1항제1호”를 “제71조제1항제1호·제1호의2”로 한다.

별표 제1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12. 「여신전문금융업법」 제70조제1항, 같은 조 제3항제2호가목·나목 및 같은 조 제6항의 죄

별표 제17호 중 “「총포·도검·화약류 등 단속법」”을 “「총포·도검·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」”로 한다.

별표 제1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19. 「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」 제2조·제3조·제5조·제5조의2·제5조의4·제6조 및 제8조(「조세범 처벌법」 제3조제1항, 제4조 및 제5조, 「지방세기본법」 제102조제1항에 규정된 죄 중 조세 및 지방세를 환급받는 경우만 해당한다)

별표 제22호 중 “제50조·제51조·제53조·제54조·제58조 및 제60조”를 “제50조제1항·제2항 및 제51조제1호·제2호·제4호”로 한다.

별표 제23호 중 “제94조[제8조(제88조에서 준용한 경우를 포함한다) 및 제37조제1항을 위반한 부분은 제외한다]”를 “제94조제1항제1호”로, “제43조(제23조를 위반한 경우만 해당한다)”를 “제43조제1항제3호”로 한다.

별표 제24호 중 “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6호”를 “제71조제1항제2호·제3호·제5호·제6호 및 제74조제1항제2호·제6호”로 한다.

별표 제26호 중 “제64조제1호·제2호”를 “제64조제5호·제6호”로 한다.

별표 제3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31. 「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11조·제12조 및 제15조의 죄

별표에 제33호부터 제46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33. 「의료법」 제87조제1항제2호 및 제88조제2호의 죄
34. 「산지관리법」 제53조제1호의 죄
35.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140조제1호의 죄
36. 「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」 제40조의 죄
37. 「공인회계사법」 제53조제1항제1호의 죄
38. 「개인정보 보호법」 제71조 및 제72조의 죄
39.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14조의 죄
40.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135조제2호의 죄
41. 「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36조제1항의 죄
42. 「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18조제1항의 죄
43. 「방위산업기술 보호법」 제21조제1항 및 제2항의 죄
44. 「화학물질관리법」 제58조제2호·제2호의2·제3호 및 제4호의 죄
45. 「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」 제17조제1항의 죄
46. 「국민체육진흥법」 제47조 및 제48조의 죄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몰수·추징에 관한 경과조치) 이 법 시행 전에 「형법」 제276조부터 제281조까지(체포는 제외한다), 제287조부터 제292조까지, 제294조, 제296조, 제348조 및 제350조의2, 「관세법」 제270조의2, 「대외무역법」 제53조제2항제2호 및 제3호, 「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」 제8조(「조세범 처벌법」 제4조 및 「지방세기본법」 제102조제1항에 규정된 죄 중 조세 및 지방세를 환급받는 경우만 해당한다), 「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 제71조제1항제2호·제3호·제5호 및 제6호, 「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11조 및 제12조, 「의료법」 제87조제1항제2호 및 제88조제2호, 「산지관리법」 제53조제1호,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140조제1호, 「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」 제40조, 「공인회계사법」 제53조제1항제1호, 「개인정보 보호법」 제71조 및 제72조,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14조,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135조제2호, 「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36조제1항, 「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18조제1항, 「방위산업기술 보호법」 제21조제1항 및 제2항, 「화학물질관리법」 제58조제2호·제2호의2·제3호 및 제4호, 「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」 제17조제1항 및 「국민체육진흥법」 제47조·제48조의 범죄행위에 따라 발생한 범죄수익등의 몰수·추징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.

◇개정이유

부정한 이익을 얻기 위한 범죄 중 폐해가 심각한 죄를 중대범죄에 추가함으로써 이들 범죄에 대해 범죄수익의 은닉·가장(假裝) 및 수수 행위를 처벌하고 그 범죄수익도 몰수·추징할 수 있도록 하여, 철저한 범죄수익 박탈을 통해 범죄를 예방하고 범죄수익의 범죄자금으로의 재투입을 차단함으로써 범죄의 재생산을 방지하려는 것임.

◇주요내용

- 가. 「형법」상 체포·감금·약취·유인·인신매매 등의 죄를 중대범죄에 추가함(별표 제1호자목 및 차목 신설).
- 나. 「형법」상 특수공갈죄 및 준사기죄를 중대범죄에 추가함(별표 제1호하목 및 거목).
- 다. 세관에 신고하는 물품의 가격조작 행위를 중대범죄에 추가함(별표 제3호).
- 라. 정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전략물자를 밀수출입하는 행위를 중대범죄에 추가함(별표 제4호).
- 마.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유출하여 이용하는 행위를 중대범죄에 추가함(별표 제24호, 제38호 신설).
- 바. 아동·청소년을 이용하여 음란물을 제작·판매하는 등의 행위, 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다른 사람의 신체를 의사에 반하여 촬영·반포하는 행위를 중대범죄에 추가함(별표 제31호, 별표 제39호 신설).
- 사. 의사 또는 의료인이 제약회사 등으로부터 의약품 채택·처방 등을 이유로 경제적 이익을 얻는 행위, 비의료인의 의료기관 개설행위 등을 중대범죄에 추가함(별표 제33호 신설).
- 아. 산지전용허가나 건축물의 건축 허가 또는 토지의 개발행위허가 등을 부정한 방법으로 받아 이익을 취득하는 행위를 중대범죄에 추가함(별표 제34호 및 제35호 신설).
- 자. 감사인이나 공인회계사가 직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금품 등을 수수하는 행위를 중대범죄에 추가함(별표 제36호 및 제37호 신설).
- 차.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에 따른 조합이 시공자 등을 선정하는 경우 금품 등을 수수하는 행위를 중대범죄에 추가함(별표 제40호 신설).
- 카. 산업기술의 유출 및 침해행위, 외국에서 사용되게 할 목적으로 영업비밀의 취득·사용·누설행위, 방위산업기술의 유출 및 침해행위 등을 중대범죄에 추가함(별표 제41호·제42호 및 제43호 신설).
- 타. 유해화학물질 등의 부정한 취급행위 등을 중대범죄에 추가함(별표 제44호 신설).
- 파. 테러단체 구성죄를 중대범죄에 추가함(별표 제45호 신설).
- 하. 스포츠 승부조작 및 인터넷 이용 불법 스포츠토트 등의 범죄를 중대범죄에 추가함(별표 제46호 신설).

<법제처 제공>